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6, 101호
(학익동,선정빌딩)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별지 제33호서식]



등부 2025년 제 559 호

인 증 서

발기인회 의사록

(주)에이치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5. 3. 13.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수 1명, 이의 인수주식 총수 60,000주
출석발기인수 1명, 이의 인수주식 수 60,000주



본 회사는 발기인 임준표 1인이 설립하는 회사로써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발기인은 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규범이 되는 정관을 별첨과 같이 정하고 정관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제2호 의안 주금 납입의 건

발기인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전부 인수하고 그 주금의 납입장소를 하나은행 인천법조타운지점(예금주 임준표)으로 정하여 2025. 3. 13.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전부를 납입하였다.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다음의 사람을 선임하였다.

사내이사 임준표 (780110-1051215)

기타비상무이사 김미영 (800420-2018719)

기타비상무이사 서제세 (870216-1692214)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고 그 선임방법에 대하여 의

건을 구한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행한 결과 다음의 사람이 감사에 선임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감 사 갈민수 (791123-1845621)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각자 그 직의 취임을 승낙하다.

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상법 제298조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여야 하나 발기인이었던 이사와 감사는 동법 제2항에 의하여 이 조사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서 영입한 다음 임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보고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동인이 이를 수락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보고자 기타비상무이사 김미영
기타비상무이사 서제세
감 사 갈민수

위 이사와 감사는 회사설립과 관련한 각종 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별첨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고 발기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이상으로서 발기인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종료하였으므로 폐회 한다.
(종료시간 11시)

위 결정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한다

2025. 3. 13.

(주)에이치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임준표



조 사 보 고 서

(주)에이치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인등은 2025. 3. 13. 본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상법 제298조 소정의 회사설립사항의 조사보고자로 선임되었는 바 이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여부.

본 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결성되어 회사의 근본규약인 정관을 작성하고 그 말미에 각 기명날인한 후 공증인가 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정관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

동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사업목적이 강행규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적법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고, 기관의 구성, 각종회의의 소집과 의결방법, 정족수 등 제반규정들이 정관 및 상법 기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2. 주식발행사항의 적정여부.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60,000주로서 이는 회사가 발행할 예정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타 주식의 발행 및 배정방법등이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인정됨.

3.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60,000주로서 1주의 금액 금5,000원으로 하여 2025. 3. 13.자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였음.

4.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주에 대한 주식금 300,000,000원은 2025. 3. 13.자로 납입이 완료되었음이 그 납입을 맡은 하나은행 인천법조타운지점이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5. 현물출자의 이행의 정확여부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고 정관에 상법 제290조 소정사항을 정하지 아니하여 감사인등을 선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정확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6. 기타사항.

기타설립에 관한 모든사항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정함이 인정됨.

위와 같이 보고함.

2025년 03월 13일

기타비상무이사 김미영



기타비상무이사 서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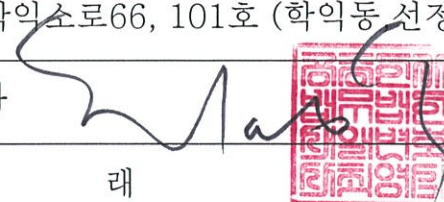


감 사 갈민수



등부 2025 년 제 559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에이치엘제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	
2025년 03월 13일자 발기인회-----	
의사록에 대하여 발기인 임준표의 대리인 장성준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2025년 03월 14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소 속	인천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66, 101호 (학익동 선정빌딩)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아 래	
1. 진술서, 2. 발기인명부, -----	
3. 정관, 4. 인감증명서, 5. 위임장-----	